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국가공무원법위반·공직선거법위반·강요·위증·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(국고등손실)

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5. 2017고합1114, 2018고합116(병합), 391(병합)]

[전문]

【피 고 인】 피고인 1 외 8인

【검 사】배성훈(기소, 공판), 최종혁, 박건영, 김익수, 박경택, 김가람, 남철우(공판)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에이치스 외 14인

【주문】

1

[피고인 1]

피고인을 판시 제1, 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, 판시 제6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.

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. 6. 12. 위증의 점은 무죄.

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[피고인 2]

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.

[피고인 3]

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.

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[피고인 4]

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.

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의 점은 무죄.

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[피고인 5]

피고인을 판시 제1,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,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.

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의 점은 무죄.

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[피고인 6]

피고인은 무죄.

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[피고인 7]

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```
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  [피고인 8]
 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.
 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  [피고인 9]
 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.
 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【이유】
  1
[이유]
  ]
[이유]
  ]
[이유]
  1
[이유]
  ]
[이유]
  【이유】
  1
[이유]
  ]
[이유]
```

]